

공인심판원 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1998년 02월 제정
2010년 01월 30일 개정

제 1 장 공인 심판원 규정

제 1 조 공인 심판원은 제1급(국제심판 Level 2), 제2급, 3급으로 나눈다. 제1급 공인 심판원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제2급 공인 심판원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. 제3급은 지방 주최대회의 심판을 할 수 있고 본 협회가 주최 대회 심판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 2 조 제1급과 제2급 공인 심판원은 매년 산하 단체로부터 추천된 자로서 경기 심판 위원회가 심사하여 이를 본 협회가 위촉한다. 제3급은 공인 심판원은 본 협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산하단체가 이를 위촉한다.

제 3 조 심판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그의 임무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자동으로 해임된다.

제 4 조 공인 심판원은 본 협회가 지급하는 심판복을 착용해야 한다.

제 5 조 본 협회가 주최,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국내대회의 심판원은 보조원을 제외하고 제2급과 제3급 공인심판원으로 조직한다. 산하경기단체가 주최,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대회의 심판원도 보조원을 제외하고 3급 공인 심판원으로서 조직하나, 주요한 부분의 심판에는 제2급 공인 심판원을 배치해야 한다.

제 6 조 국제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심판 파견을 제1급 심판원을 파견한다.

제 2 장 공인 심판원 자격에 대한 세칙

제 7 조 공인 심판원은 심신이 건전하고 법적 결격사항이 없으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자로서, 공인 심판원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라야 한다.

제 8 조 제3급 공인 심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- ① 체육관련학과 및 동호인 등 트라이애슬론에 관심이 많은 자로 공인 심판원 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
- ② 공인 심판원 강습회는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제 9 조 제2급 공인 심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 (2010년 개정)

- ① 제3급 공인 심판원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협회 공인 트라이애슬론대회에 3년간 6회(년 2회 이상)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후 자격이 인정된 심판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자.
- ② 공인 심판원 강습회는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
제 10 조 국제 심판원의 자격은 국제협회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자를 규정에 의한다.

- ① 제2급 공인 심판원의 자격을 취득자로 본 협회 또는 산하 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서 15회 이상 2급 심판원을 역임한 만 35세에 달한 자
- ② 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심판위원회의 추천으로 국제 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회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

제 11 조 국제 심판원은 본 협회가 개최하는 년1회의 특별 강습회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- ① 이 규정 및 세칙은 1998년 2월 이사회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개정 규정은 2010. 1. 30. 이사회 승인으로 개정되어 시행한다.